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6월 5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(안 제2조)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: 20인 이내(안 제3조)
-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(안 제6조)
 -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. 다만 필요 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토록 함.
 -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
-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(안 제7조)
-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(안 제9조)
-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(안 제15조)

의안전문 :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
7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
8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
9.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
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
11.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
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13.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14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
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제3조(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
2.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
3.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·의결
4.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·의결

③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장 종합자원봉사센터

제4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) 도지사는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내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
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
3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5.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

6. 시·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

7.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6조(센터의 운영)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
②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④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 ①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.

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센터의 조직)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

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.

제9조(센터의 지원)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센터는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·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3장 자원봉사진흥

제12조(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지원) ①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②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)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경력 인정 등) 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

수 있다.

제15조(보험가입)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실비지급)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[제정 2005. 8. 4. 법률 제7669호]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·지원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자원봉사자의 보호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 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[제정 2006.2.6. 대통령령 제19318호]

제10조 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
2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
3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, 후유장애 및 의료·입원·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
2.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

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 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3.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
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 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

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.

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④특별시·광역시·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
3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5.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
6.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
7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⑤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2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6.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민 법

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33조 (법인설립의 등기)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

제4조 (등록)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(이하 "주무장관"이라 한다)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.

②(생략)

제6조 (보조금의 지원)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"등록 비영리민간단체"라 한다)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(이하 "공익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.

③(생략)